

#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2017 - 32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6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목적

- 가. 백두대간 4개 시·군의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·처리함으로써 상생발전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『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』를 구성함에 따라,
- 나.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규약을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규약명 :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
- 나. 구성 : 강원도 남부 4개 지방자치단체(태백, 영월, 평창, 정선)
- 다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2조
- 라. 주요기능
  - 1) 상호연관된 지역 현안사항의 공동해결 협력
  - 2)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공동발굴
  - 3) 관광·문화·스포츠·축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
  - 4) 상시 정보교환 및 지역간 우호증진 협력
- 마. 협의회 조직 : 회장 1(순번제, 現 영월군), 회원 3
- 바. 회의 : 정기회(워크숍), 임시회

### 3. 주요 활동내역

- 가.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 개최 7회 : 2009, 2011 ~ 2016
- 나. 지역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 : 63건
- 다. 회원시군별 대표축제, 각종 행사 공동참여 및 농특산물 홍보 : 지속
- 라.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대표축제 모니터링 공동 운영
- 마.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

- 붙임 1. 협의회 규약(안) 1부.  
2. 관련법령 1부. 끝.

[붙임 1]

##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

2008. 6. 16. 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약은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사안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생발전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협의회는 “백두대간 광역행정 협의회”라 칭한다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.

**제3조(구성)** 본 협의회는 강원남부 지역에 위치한 태백시·영월군·평창군·정선군으로 구성한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위원은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시장·군수로 한다.

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.

**제5조(사무소의 위치)** 본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둔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② 초대 협의회장은 추대로 하며, 이후 협의회장은 시·군 행정직제 순서에 의거 순임(順任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7조(처리사무)** 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상호 연관된 지역 현안사항의 공동해결 협력
2.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공동 발굴
3. 관광·문화·스포츠·축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
4. 사회단체 및 공직자 교류 활성화
5. 상시 정보교환 및 지역 간 우호증진 협력
6. 이 밖에 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

**제8조(사무처리)**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협의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, 서기는 기획담당 주사로 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임시회는 협의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- ③ 협의안건이 있는 위원은 서면으로 협의회장에게 통보하고, 협의회장은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.
- ④ 협의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·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⑤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⑥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자료의 제출요구 등)** 본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의 개진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1조(분과위원회)** ① 본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업무담당 실·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·과장이 되며,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.
- ④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결과를 본 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,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경비의 부담)** ① 본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공동 상생발전 방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3조(회계)** ① 본 협의회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.

- ② 본 협의회 경리사항은 정기회의 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(규약개정)** 본 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15조(보칙)**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약은 협약 체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4.18.] [법률 제14768호, 2017. 4. 18., 일부개정]

## 제2절 행정협의회

**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**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**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**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**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